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110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자격을 일부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도자자녀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로 변경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 확대(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09. 28. ~ 2022. 10. 28.)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도자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생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	②
당 1회(한 학기분)에 한정하여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도자자녀 장학금 이외	다만, 지도자 자녀 타 장학금을
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받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
는 제외한다.	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
	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변경(안 제4조)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 대하지만 추가 예산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성 명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담당자: 행정8급 박연수)
연락처	02-2600-6160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 가 번 호	2022-35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						
八八百川 6	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	급	성 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 17.	
관련조문		검토결	. 과	과 조치사항		- 항	
조례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자격을 일부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도자자녀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타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 확대 (안 제4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33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부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박연수	전화번호	02-2600-616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자격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중합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 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성별영향평가책						
반영계획서						

2022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자치행정과장 귀하